

수원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0나863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준식, 구현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심성훈

변 론 종 결 2021. 12. 8.

판 결 선 고 2022. 1. 26.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9. 8. 선고 2020가단51769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2. 9.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43,601,3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3,601,3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2015. 2. 9.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1996. 6.경부터 2000. 5.경까지 발생한 총 7건의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2021. 9. 7. 기준 43,601,320원의 국세(부가가치세) 채권이 있다.1)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B은 2015. 2. 9.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5. 2. 11.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우체국 예금 6,060원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B에 대하여 국세 채권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위 국세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란(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2행 내지 제4면 제3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해행위 당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며, 그 가액에서 제3자가 취득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포함) 및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5. 3. 11. 근저당권자 C조합,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44,4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한편 이 법원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75,000,000원인 사실은 명백한 다툼이 없다. 위 공동담보가액은 수익자인 피고가 취득한 이익과 같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위 43,601,320원이다.2)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은 위 각 금액 중 적은 금액인 43,601,32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원고의 가액배상에 의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43,601,3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43,601,3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욱, 판사 강경묵, 판사 김태형

별지

목 록

1. [토지] 강원도 춘천시 대 201.7㎡

2. [건물] 강원도 춘천시

[도로명주소] 강원도 춘천시

목조시멘트기와지붕단층단독주택

87.66㎡

지하실 9.72㎡

- 끝 -

1) 원고는 제1심에서 2020. 1. 5. 기준 112,583,650원의 국세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과세관청의 처분 일부취소(변경)로 인하여 원고 주장 국세 채권은 2021. 9. 7. 43,601,320원으로 변경되었고(을 제3호증), 이에 원고는 이 법원 제3차 변론기일에서 ‘B에 대한 국세(부가가치세) 채권은 43,601,320원이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인 2015. 2. 9.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채권 액수는 기록상 분명하지 않다.

2) 위 금액은 2021. 9. 7.을 기준으로 산정된 국세 채권 액수이다. 원고는 위 기준일 이후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주장한 바 없다.